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58호 2016. 5. 20. (금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149호 「하동군 관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
- 하동군 조례 제2150호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20
- 하동군 조례 제2151호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26
- 하동군 조례 제2151호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 하동군 조례 제2153호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146호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35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6-58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114차) 44
- 하동군 고시 제2016-5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목통 탄소 제로 마을 주식회사) 46
- 하동군 고시 제2016-6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강부*) 47
- 하동군 고시 제2016-64호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시설기준 고시 48
- 하동군 고시 제2016-6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여태*) 51
- 하동군 고시 제2016-6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115차) 52
- 하동군 고시 제2016-6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오성*) 54
- 하동군 고시 제2016-6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강영*) 55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6-485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허가 공고(정재*) 56
- 하동군 공고 제2016-487호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7
- 하동군 공고 제2016-492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 공고 58
- 하동군 공고 제2016-570호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 공고 61

회									
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5월 20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49호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 출신의 동편제 명창 유성준·이선유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판소리의 보존·계승발전 및 선양을 위하여 건립한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관”이란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의 전시실 및 감상실, 교육관, 한옥체험관, 누각, 관리사무소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전시실 및 감상실”이라 함은 판소리 명창 보유자였던 유성준·이선유 선생의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유형·무형의 유산 자료를 전시 및 감상하기 위하여 건립한 전시관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체험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체험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체험관의 명칭은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이라 한다.

② 체험관의 위치는 하동군 악양면 하중대길 44-54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체험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성준·이선유 선생의 판소리 선양 사업
2. 판소리 관련 자료의 수집·전시 및 보존·관리
3. 판소리 예능의 체험교육
4. 판소리 예능의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5. 판소리의 홍보와 간행물 제작·배포
6. 체험관의 운영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군수가 체험관의 건립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운영 및 위탁) ① 체험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판소리의 보존·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체험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체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하 동 군 공 보

(4) 제 458 호

제7조(이용시간) ① 체험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체험시설과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다만, 7월과 8월에는 1시간 연장 운영한다.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항의 이용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① 체험관의 시설 중 전시실·감상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시설과 숙박시설의 이용료는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되는 시설의 이용료를 이용개시일 하루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정해진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용한 때에는 초과한 시간당 해당 시설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9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고장 등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3. 시설이용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이용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50%를 반환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자 등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체험관 내에서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람 및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시설이용 승인) ① 체험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이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시실 및 감상실만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승인 여부와 이용료 납입방법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이용 승인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취소·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이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한 경우
2.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체험관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변상책임)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체험관 내 시설물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하동군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장 위탁관리

제15조(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 ① 군수는 수탁자를 모집할 때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체험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의 수탁자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수탁자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6조(위탁운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체결 등) 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가 선정되면 군수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탁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 기일 내에 군수와 별지 제7호서식의 위탁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협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사용료) ① 체험관의 위탁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한다.

② 협약에 따라 사용 수입액과 체험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원가산정 사용비용을 상계하여 위탁 사용료로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운영 실적이 미흡한 등 수탁자에게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위탁한 시설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20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유성준·이선유 선생의 선양사업과 그 밖의 판소리 관련 사업 추진, 그 외 체험관 운영 등을 위해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운영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판소리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예능 체험교육,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관리,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과 전시품 등에 대해 선량한 운영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가 체험관 내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을 체험관 운영 관리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전시품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임 대할 수 없다.
- ⑥ 체험관의 운영·관리 시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⑦ 수탁자는 체험관의 내부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⑧ 수탁자는 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서 지정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하동군 관소리 체험관 체험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이용구분	기준	이용시간		이용요금	비고
체험시설 (체험, 교육)	평일	전일	09:00~18:00	50,000원	
		오전	09:00~13:00	25,000원	
		오후	13:00~18:00	25,000원	
		야간	18:00~22:00	40,000원	
	토요일· 공휴일	전일	09:00~18:00	70,000원	
		오전	09:00~13:00	35,000원	
		오후	13:00~18:00	35,000원	
		야간	18:00~22:00	50,000원	

※ 이용시간의 일부만 이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우천 등으로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 동 군 공 보

(10) 제 458 호

[별표 2]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숙박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준	이용시간	일~목요일	금~토요일, 공휴일 앞날
숙 박	전통한옥 체험관	1박(1실 4명)	14:00 부터 ~ 다음날 10:00 까지	35,000	50,000

[별지 제1호 서식]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시설이용 승인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단체명 또는 개인		연 락 처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이용일시	년 월 일(: ~ :)			
이용목적 (행사명)				
참석예상인원				
비 고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 체험관 시설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동군수 귀하

하 동 군 공 보

(12) 제 458 호

[별지 제2호서식]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시설이용 승인대장

승인 번호	신청 월일	신 청 자				이용목적	참석 인원	이용일시	이용료(원)	결 재		
		주 소	성 명	성별	연락처					담당자	계 장	실 장

[별지 제3호 서식]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시설이용 승인서

신 청 인	주 소			
	개인 또는 단체명		연 락 처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이용일시	년 월 일(: ~ :)			
이용목적 (행사명)				
참석예상인원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체험관 시설 이용을 (신규,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하 동 군 공 보

(14) 제 458 호

[별지 제4호 서식]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시설이용 승인(취소·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개인 또는 단체명		연 락 처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이용일시	년 월 일(: ~ :)			
이용목적 (행사명)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이용일시			
	기 타			
비 고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 체험관 시설 이용승인을(취소,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수 탁 신 청 서

1. 시설명 :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2. 신청자 기재사항

단체명 또는 개인		단 체 구 분	
승인(등록)기관		승인(등록)일자	
승인(등록)번호		목 적 사 업	
대표자 성명		대표자 또는 개인 (생년월일)	(남/여)
대표자 또는 개인 주소			
단체 또는 개인 소재지			

3. 제출서류

- 가. 사업계획서
- 나. 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 이력서
- 다. 사업자등록증 1부.

4. 약정사항

- 가. 수탁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운영하여야 함.
- 나. 조례 및 관계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년 월 일

「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을 신청합니다.

위 단체 대표자 및 개인 : (인)

하동군수 귀하

(16) 제 458 호

[별지 제6호 서식]

수탁 결정 통지서

시설명 :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수탁자 성명 :

주소 :

귀 단체 또는 개인은 「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7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우리 군과 협약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
습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7호 서식]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위탁 관리운영 협약서 안

(재산의 표시)

소재지 : 하동군 악양면 하중대길 44-54

시설물 : 전시실 및 감상실, 교육관, 한옥체험관, 누각, 관리사무소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위 표시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운영을 위탁 협약함에 있어 위탁자 하동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 ○○○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기간) 갑은 위 표시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을 을에게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준수사항) ① 을은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운영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수탁권을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3. 수탁권을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결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을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3조(민·형사상 책임 등) ① 을은 시설물 관리 운영시 주의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하 동 군 공 보

(18) 제 458 호

② 제1항의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피해 당사자 또는 갑에게 전액 보상을 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갑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③ 을은 시설을 수탁 관리하면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조건) ① 본 위탁 재산 일부를 갑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야 하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 등을 관리 운영하되, 특히 주변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역주민 또는 탐방객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해지조건)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등 모든 시설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해지통보) 갑과 을이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원상회복) 을이 사용한 시설물을 갑에게 반납할 때,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탁받은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운영 예정일) ① 관리운영 예정일은 년 월 일로 정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을이 운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하동군 관련 조례 등의 제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이 없거나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협약서의 효력 등) ① 본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발생하고 민·형사상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 종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②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위탁자)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 동 군 수 (인)

을 (수탁자) : 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 (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5월 20일

하 동 군 수 운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50호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의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한다.

1. 짚라인
2. 빅스윙
3. 파워팬/킥점프
4. 모노레일
5. 알파인코스터
6. 에코어드벤처(슬라이드/아바타윈 포함)

제3조(관리·운영 및 위탁) 시설물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자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제4조의 위원회에서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되면 군수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그 외에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안전대책 및 보험가입 등) 군수는 시설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사고나 손해발생에 대비해 시설별로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2) 제 458 호

제8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 시설물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시설물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시설물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장비, 그 밖의 재산을 수탁목적 및 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또는 담보설정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설치 및 변경·증축) 수탁자는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거나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24) 제 458 호

[별표 1]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이용시간(제8조 관련)

구 분	월 별	이 용 시 간	비 고
빅스윙 파워팬/퀵점프 짚라인	동절기(11월 ~ 2월)	09:00 ~ 17:00	※ 필요시 하동군과 협의하여 연장 또는 단축운영 가능 (기상악화, 결빙 등의 경우)
모노레일 알파인코스터 에코어드벤처	하절기(3월 ~ 10월)	09:00 ~ 18:00	

[별표 2]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이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개 인	단 체 (20인 이상)	비 고
짚라인	어른(20세 이상)	45,000	40,000	※감면기준 1. 시설 사용료의 30% 감면 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2. 시설 사용료의 50% 감면 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장애인 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국가유공자 (단,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 제시자)
	청소년(14세 이상~19세 이하)	40,000	35,000	
	어린이(8세 이상~13세 이하)	35,000	30,000	
빅스윙	어른(20세 이상)	18,000	16,000	
	청소년(14세 이상~19세 이하)	16,000	14,000	
	어린이(8세 이상~13세 이하)	14,000	12,000	
파워팬/ 쿼점프	어른(20세 이상)	3,000	2,500	
	청소년(14세 이상~19세 이하)	2,500	2,000	
	어린이(8세 이상~13세 이하)	2,000	1,500	
모노레일	어른(20세 이상)	5,000	4,500	
	청소년(14세 이상~19세 이하)	4,500	4,000	
	어린이(8세 이상~13세 이하)	4,000	3,500	
알파인 코스터	어른(20세 이상)	9,000	8,000	
	청소년(14세 이상~19세 이하)	8,000	7,000	
	어린이(8세 이상~13세 이하)	7,000	6,000	
에코 어드벤처	어른(20세 이상)	10,000	9,000	
	청소년(14세 이상~19세 이하)	9,000	8,000	
	어린이(8세 이상~13세 이하)	8,000	7,000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5월 20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51호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2.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의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군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어떠한 경우라도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폐비닐, 농약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화하고 수거·재활용하는 등 영농부산물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각허가신청 등) 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읍·면장에게 소각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그 허가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내주고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에게 그 허가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허가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을 실시할 시에는 읍·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 입회하는 등 산불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등) ① 군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연 1회 이상 풀베기를 하도록 지도하며, 베어낸 잡초는 전량 사료 및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허가받지 않은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가연성 잡초류는 모두 제거하도록 지도한다.

하 동 군 공 보

(28) 제 458 호

제7조(지원 등) ① 군수는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 제거, 영농 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을 선정하여 포상금 등을 지급하거나 각종 영농·축산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기간에 인화물질제거나 영농부산물 파쇄 등을 실시하는 마을에는 유류대나 동력파쇄기 등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등) ① 군수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7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산림부서 담당과장과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반자 명단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림부서 담당과장은 소각금지 위반자 명단을 농업관련 담당부서에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각종 영농·축산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금지 위반자 명부(제8조 관련)

연 번	구 분	위반자 인적사항			위반 및 처분내용				비고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일시	장소	위반 및 피해내용	처분내용	

※ “구분” 란은 산불 및 논·밭두렁, 영농부산물(폐기물) 등으로 표시

하 동 군 공 보

(30) 제 458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5월 20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52호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 「도로법」 제8조”를 “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1.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신청인	성 명(명칭)			<u>생년월일/</u> <u>(법인사업자)등록번호</u>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나무 종류	규격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 지름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납부기간				
<p>「하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하 동 군 수 귀 하</p>					
<p>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현황사진</p> <p style="text-align: center;">5.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p>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21조-----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가로수"란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 등 「도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3.·4. (생 략)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 ----- ----- -----. 3.·4. (현행과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5월 20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53호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소재지)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는 하동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로 군 일원에 둔다.

제31조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을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3조(소재지)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 라 한다)의 소재지는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251 일원에 둔다.</u></p>	<p><u>제3조(소재지)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 라 한다)는 하동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로 군 일원에 둔다.</u></p>
<p><u>제31조(준용) 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과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u></p>	<p>제31조(준용) ----- ----- --- 「<u>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u>」 를 -----.</p>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5월 20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1146호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자 공개모집) 군수는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수탁자를 모집할 때에는 해당 시설물·위치·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

제3조(수탁신청)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운영 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수탁자 모집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모집공고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시설별 세부 평가기준을 정하되, 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받은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5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진행상황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약체결 등) ① 수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받은 자는 지정된 날까지 군수와 위탁관리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기간 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 운영개시 전에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각종 대장 및 장부 비치)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

2. 수입내역부(별지 제3호서식)
3. 지출내역부(별지 제4호서식)
4. 장비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5. 시설안전점검일지(별지 제6호서식)

제8조(위탁해지통지)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운영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38) 제 458 호

[별지 제1호 서식]

금오산 어드벤처 ()시설 위탁운영신청서

신 청 인	법인·단체 명칭		대 표 자	(남/여)
	소 재 지		전화번호	
	법인·단체 설립일		수입재산 및 연수입	
	재 산 내 역	고정자산	유동자산	

기타 특이사항(현재 운영 중인 시설 및 운영실적 등 기재)

위와 같이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법인명 : 대표자 (인)

하동군수 귀하

(붙임서류)

- | | |
|------------------------|-------|
| 1. 법인정관, 허가증사본 및 등기부등본 | 각 1 부 |
| 2.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 | 1 부 |
| 3. 시설위탁 운영계획(안) | 1 부 |
| 4. 대표자 사용인감계 | 1 부 |
| 5. 유사시설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1 부 |

[별지 제2호 서식]

금오산 어드벤처 () 시설 운영일지

(년 월 일)

			결 재

근 무 자	직 성 명 인				
	전일까지 미 결	금일접수	금일처리	미 결	비 고
문 서 처 리					
장비 및 물품 관 리 상 태					
금 일 업 무 취 급 현 황					
계 획 또 는 진 행 중 인 사 업 및 행 사					
특 기 사 항					
비 고					

하 동 군 공 보

(40) 제 458 호

[별지 제3호 서식]

수 입 내 역 부

월 일	적 요	납 부 자	수 입 액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지출내역부

월 일	적 요	채 주	지 출 액	비 고

하 동 군 공 보

(42) 제 458 호

[별지 제5호 서식]

장 비 관 리 대 장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구 입 일	활 용 실 태			비 고
							사 용	불 용	망 실	

[별지 제6호 서식]

금오산 어드벤처 ()시설 안전점검일지

(점검일 : 년 월 일(월 주차 정기점검))

			결 재

점 검 자	직		성 명 인		
시 설 현 황			점검결과	조치내용	비고
시 설 명 칭	규 격	준공일			

도로명주소 부여고시(114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4. 28.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서재길 64 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4.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45) 제 458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1030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116-6	20160428	20070618	도로시점이 악양 중심으로부터 동쪽에 위치하여 방향성에 따라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1528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중서길 60-71	20160428	20070618	중서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143-5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사길 15	20160428	20070618	명호입구부터 절골까지 도로가 명사길이라 불리워졌기 때문에 명사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산53-2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새터길 10	20160428	20070618	술상이라는 법정리명에 새터를 합성하여 술상새터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886-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영당2길 42-1	20160428	20070618	금천사를 세워 쌍계사에 모 셨던 고운선생의 영정을 옮 겨오면서 붙여진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 방식의 두 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범아리 134-4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293	20160428	20070618	사적 217호인 하동읍성앞을 지나가는 도로로서 문화재 이름에서 도로명부여	
건물번호 변경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촌길 83-30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중서길 97-45	20160428	20070618	중서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변경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촌길 83-33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중서길 97-42	20160428	20070618	중서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변경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촌길 83-3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중서길 97-44	20160428	20070618	중서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112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서재길 64	20160428	20090302	서당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서재골 지역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134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서재길 61-89	20160428	20090302	서당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서재골 지역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311-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목도1길 35	20160428	20090302	목도라는 자연마을이름을 사용하여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서항리 1003-5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중촌길 59-4	20160428	20091229	마을명 부여	

하 동 군 공 보

(46) 제 458 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고시

공고 제 2016 - 59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농업회사법인 목통 탄소제로 마을 주식회사		
	대표자 (성 명)	김 수 만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목통길 99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산230-1(구) (인근지번 범왕리 산228(임))		
	면적	58.0㎡		
	기간	2016. 5. 2. ~ 2021. 5.1.		
	목적	구조물 설치(취입보)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고시

공고 제 2016 - 62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4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강 부 수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시장3길 4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821(구) (인접지번 동산리 1919-2(전))		
	면적	13.6㎡		
	기간	2016. 5. 9. ~ 2021. 5. 8.		
	목적	진출입로(콘크리트포장)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하 동 군 공 보

(48) 제 458 호

하동군 고시 제2016-64호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시설기준 고시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5월 일

하 동 군 수

1. 적용 대상 : 관광숙박업

가. 호텔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 가목)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 나목)

2. 적용 기간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기존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기간 내

3. 적용 업종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휴게음식점 영업), 나목(일반음식점영업), 바목(제과점영업)의 신고 수리된 영업

4. 옥외영업 시설기준

가. 옥외영업장은 기 신고한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면적의 지상에 한함

나. 옥외영업장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어닝,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일광, 우수 등의 방지로 조리식품의 위생적 제공을 위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단 외벽 및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다. 시설물의 형태, 색상 등은 알프스 하동과 시설물 주변 환경과 건축물 외부 마감재와 조화되게 설치하고 햇볕 가리는 시설은 접이식, 이동식에 한하여 설치 가 허용된다.

라. 옥외영업장에는 조리 완료된 식품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고 식품의 운반은 위생적이며 덮개가 있는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옥외영업장에는 추가적인 주방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으며, 단순히 테우거나 굽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옥외영업장은 건축법 등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사.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별지] “옥외영업신고서” 를 작성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 등 검토하여 옥외영업의 가부를 결정 문서상으로 통지하고 기존 영업 신고증에 옥외영업 신고사항을 표기하여 교부해야 한다.

아. 옥외영업 시설로 인한 소음과 나쁜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개선토록 노력해야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옥외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5.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옥외영업신고서 서식 1부

하 동 군 공 보

(50) 제 458 호

[별지]

옥 외 영 업 신 고 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 신고 내역	업소명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번호	영업장 면적		

신고사항	옥외영업장 면적		취 급 품 목	
	비 가림 시설	천막 개, 파고라 개, 파라솔 개, 기타()		
	식탁(의자)	인용 개,	인용 개,	인용 개, 의자 개
	기타시설			

위와 같이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내의 옥외영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

도면(옥외 영업장 개략도)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고 제2016-65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여태문	주소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동상신길 89-15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악양면 신흥리 973(구), 인근지번 : 299(답)		
	면적	813㎡		
	기간	2016. 5. 27. ~ 2021. 5. 26.		
	목적	진출입로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하동군 고시 제2016-66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115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5. 12.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굴다리2길 40 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9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5.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53) 제 458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동매리 560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717	20160512	20070618	도로시점이악양중심으로부터 서쪽에위치하는 방향성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산4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매화골먹점길 89-4	20160512	20070618	매실이 많이 나는 마을특성에 먹점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306-1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남당길 42-4	20160512	20070618	남당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410-8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231-1	20160512	20070618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 부터 동쪽에 위치하여 방향성에 따라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316-1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재첩길 72	20160512	20080402	도로변에 재첩마을이 분포하여 있어 지역적 특색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497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사등길 35	20160512	20090302	양포의 서북쪽 골짜기가 옛적 큰 홍수를 당하여 모래가 밀려와 쌓여 이축된 지형에 구성되어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757-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굴다리2길 40	20160512	20090302	기차가 지나가는 굴다리가 위치하는 지역적 특성에 일 련번호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790-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한계길 167	20160512	20090302	옥산에서 흐르는 차고 맑은 물이 마을 앞을 흘러가므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319-3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적량로 403	20160512	20090302	적량면의 중앙을 통과하는 간선도로로 면이름에서 도 로명 부여	

하 동 군 공 보

(54) 제 458 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고시

고시 제 2016 - 67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2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오 성 관	주소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076 우남퍼스트빌 203-901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1927(구) (인근지번 상이리 291-1(전))		
	면적	284.0㎡		
	기간	2016. 5. 12. ~ 2021. 5. 11.		
	목적	진출입로 확보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 고 제 2016-69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7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강영순	주소	하동군 진교면 새미골길 95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흥리 863(구), 인근지번 : 621(답)		
	면적	41㎡		
	기간	2016. 5. 20. ~ 2021. 5. 19.		
	목적	진출입로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하 동 군 공 보

(56) 제 458 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 2016- 485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정재식	주소	경남 진주시 새평거리 30, 110동 2802호(엠코타운더프라하)
소하천명		입석천		
공사(점용· 사용) 개요	위치	경남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939-8(천) (인근지번 입석리 244-1(답))		
	면적	3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0㎡
	기간	2016. 4.27. ~ 2021. 4.26.		
	목적 및 사유	토지의 점용(농사용 진입로)		

열람서류(하동군 재난관리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하동군 공고 제 2016 - 487 호

2016년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 공시기준일 : 2016년 1월 1일
- 공시대상 : 15,569호
- 공시사항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공시방법 : 군 공보지, 군 홈페이지, 지역일간지, 읍·면사무소 게시판 등

2. 이의신청

- 제출기간 : 2016년 4월 29일 ~ 5월 30일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장소 : 군청 민원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 제출방법
 - 서 면 :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팩스우편 접수 가능
 - 인터넷 : 군 홈페이지(토지건축정보 → 개별주택가격 → 이의신청)에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3. 이의신청 제출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우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055)880-2123)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29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16 - 492호

공 고

농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하오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면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4. .

하 동 군 수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가. 위치 : 하동군

나. 목적 :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다. 내역

1) 변경 : 농업진흥구역 293.1ha → 농업보호구역 293.1ha

2) 해제 : 농업진흥구역 333.4ha, 농업보호구역 21.9ha → 농업진흥지역밖 355.4ha

라. 해제근거 : 농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2. 공람장소 및 기간

가. 공람장소 : 하동군 농축산과 (☎ 055-880-2414) 및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공람기간내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4. 관련도면 및 조서 : 도면 및 조서 게재생략(공람장소 또는 하동군 홈페이지에 비치)

열 람 대 장

하동군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공람·공고

일련 번호	인적사항			전화 번호	의 건 여 부 (별도 서면제출)	서명·날인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하 동 군 공 보

(60) 제 458 호

주 민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사업장 위치	하동군		
사 업 자			
④ 의견제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민의견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16 - 570호

2016.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가 격 기 준 일 : 2016. 1. 1.
- 2. 정정가격 결정·공시일 : 2016. 5. 13.
- 3. 정정가격 결정·공시 호수 : 1호

순번	주 택 소 재	결정가격	정정가격	비 고
1	하동 광평 295-8	26,100,000원	44,300,000원	주건물 및 부속건물 면적 및 용도 착오기재

4. 행정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하동군 홈페이지에서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민원과 부동산평가담당부서(☎055-880-21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년 5 월 13 일

하 동 군 수